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청년일자리과)

제출일 : 2025. 10.

## 1. 제안이유

- 가.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최종 수용 개선과제’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개선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 수정
- 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시설대관료)의 모호한 산정기준 변경 및 누락 사항(공유주방) 등 반영
- 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수련시설 상주기관의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변경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산정 및 반환기준 변경(안 제19조)
- 나.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규정 변경(안 제20조)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한종수)

-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과정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와 행정 간의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판단됨.

특히, 대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안’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및

- 시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